
2019년도 공주시 재정공시

(당초 예산기준)

2019. 2.



공 주 시

순 서

[표 지]

1. 총괄	2
2. 예산규모	4
3. 재정여건	8
4. 재정운용계획	12
5. 재정운용성과	22

〈 별도붙임 〉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19년 공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공주시장 (인)

- ◆ 우리 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58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258억원) 보다 32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0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72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 부거래는 277억원입니다.
- ◆ 우리 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6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34%입니다.
- ◆ 우리 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0.9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 재정자립도는 18.66%이지만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66.34%로 재원재량활용의 폭이 큰 편이며
 - 자체세입 확대, 국·도비 예산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담당관실 성정은 (041-840-2028)

1. 총 괄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공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6,580	6,020	560	6,258	5,664	594
	세 출 예 산	6,580	6,020	560	6,258	5,664	594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8.66	16.12	2.54	19.75	22.17	△2.4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34	66.31	0.03	65.04	66.84	△1.80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	3	△2	27	30	△3
재정운영계획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54억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7억원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8억원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해당없음					

▶ 유사단체 : 시-4(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우리는 시-(4) : 20개시 (구리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통영시, 밀양시)

2. 예산규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공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7,957	580,500	40,000	29,500	7,95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57,604	559,255	563,147	601,971	657,95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합 계	473,000	100.00	480,000	100.00	487,000	100.00	520,000	100.00	580,500	100.00
지방세	50,800	10.74	53,100	11.06	50,730	10.42	61,790	11.88	63,910	11.01
세외수입	17,684	3.74	17,951	3.74	18,577	3.81	18,196	3.50	16,627	2.86
지방교부세	199,500	42.18	206,010	42.92	221,000	45.38	243,000	46.73	256,500	44.19
조정교부금 등	14,000	2.96	14,500	3.02	16,000	3.29	18,000	3.46	20,300	3.50
보조금	171,266	36.21	164,082	34.19	160,414	32.94	175,173	33.69	195,400	33.66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750	4.18	24,357	5.07	20,279	4.16	3,841	0.74	27,763	4.7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공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7,957	580,500	40,000	29,500	7,95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8	2019
557,604	559,255	563,147	601,971	657,95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합 계	473,000	100.00	480,000	100.00	487,000	100.00	520,000	100.00	580,500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21,265	4.50	18,470	3.85	21,091	4.33	22,542	4.33	25,176	4.34
공공질서 및 안전	9,407	1.99	9,913	2.06	9,380	1.93	9,221	1.77	6,988	1.20
교 육	2,646	0.56	3,600	0.75	4,757	0.98	7,681	1.48	8,268	1.42
문 화 및 관 광	42,454	8.98	50,056	10.43	49,988	10.26	41,259	7.93	46,743	8.05
환 경 보 호	36,484	7.71	28,925	6.03	33,409	6.86	37,497	7.21	23,409	4.03
사 회 복 지	121,484	25.68	123,599	25.75	127,874	26.26	141,826	27.27	162,011	27.91
보 건	8,445	1.79	12,718	2.65	9,472	1.94	11,611	2.23	11,758	2.03
농 립 해 양 수 산	65,697	13.89	60,718	12.65	51,378	10.55	59,990	11.54	69,154	11.91
산 업 · 중 소 기 업	17,761	3.76	9,337	1.95	8,135	1.67	10,369	1.99	7,689	1.32
수 송 및 교 통	19,769	4.18	19,547	4.07	18,722	3.84	20,425	3.93	25,353	4.37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0,865	6.53	37,077	7.72	38,743	7.96	36,721	7.06	58,654	10.10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10,979	2.32	15,834	3.30	19,142	3.93	20,788	4.00	31,597	5.44
기 타	85,743	18.13	90,208	18.79	94,910	19.49	100,071	19.24	103,700	17.8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15,844	672,494	56,650	9.20
공주시	601,971	657,957	55,987	9.30
출자·출연기관	13,873	14,537	664	4.7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1개) :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 : <http://www.gjjanghak.org/html/kr/>

3. 재정여건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6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8.66 (13.87)	580,500 (580,500)	108,300 (80,537)	472,200 (472,200)	0	0 (27,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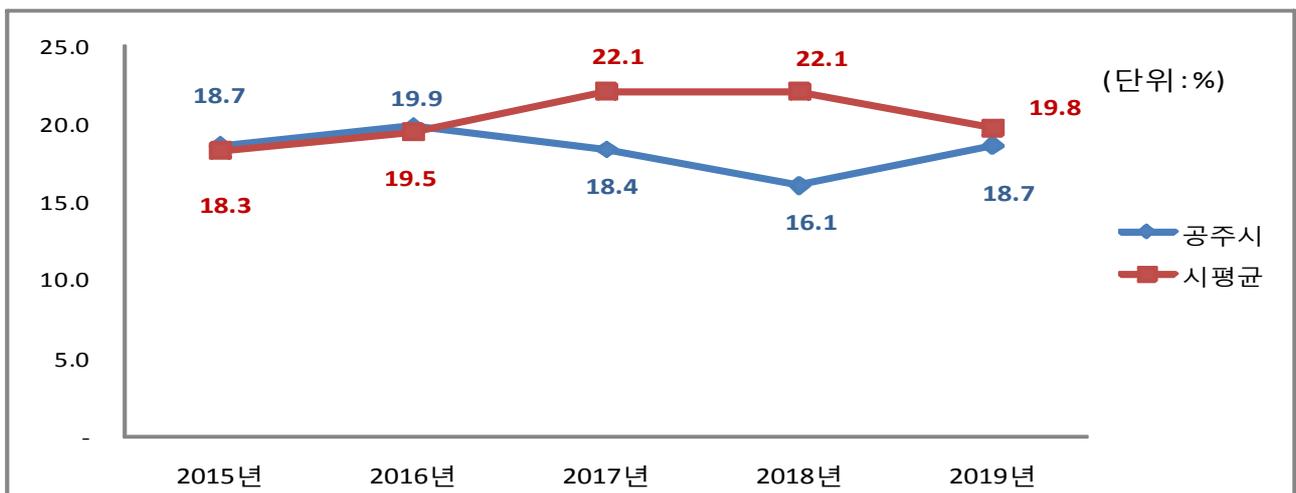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8.65 (14.48)	19.88 (14.80)	18.40 (14.23)	16.12 (15.38)	18.66 (13.87)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볼 때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018년 대비 세외수입 감소, 지방세와 내부거래가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2.6% 증가.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6.34 (61.56)	580,500 (580,500)	385,100 (357,337)	195,400 (195,400)	0	0 (27,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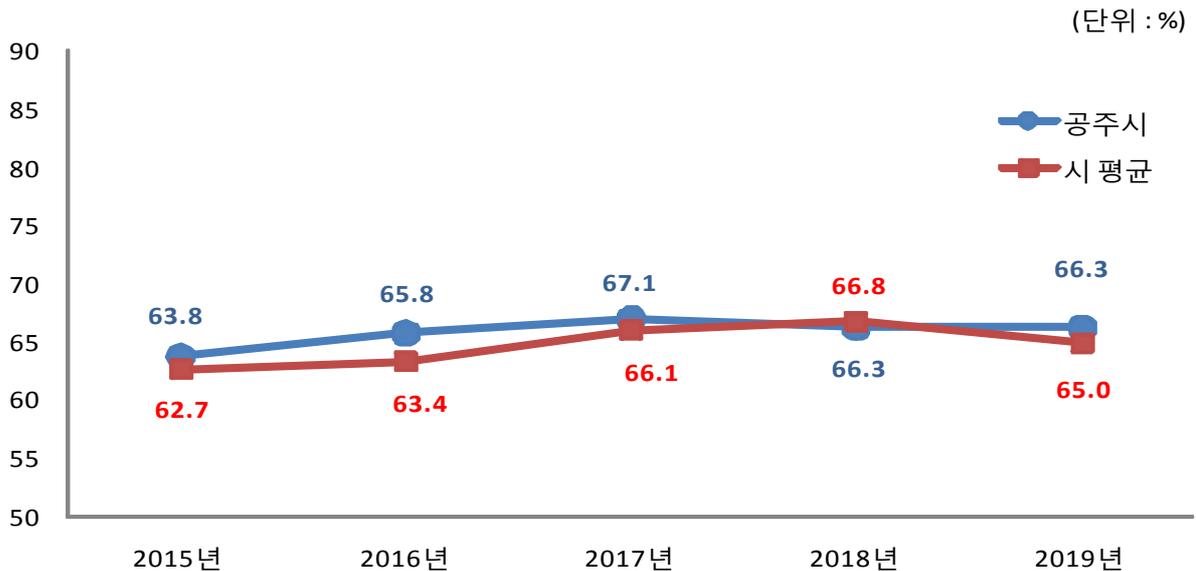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제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3.79 (59.62)	65.82 (60.74)	67.06 (62.90)	66.31 (65.57)	66.34 (61.56)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는 세입합계 580,500백만원 중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385,100백만원, 용처가 정해진 보조금은 195,400백만원으로 유사단체 평균보다 재정자주도가 1.3% 높게 나타남.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72,698	631,193	6,236	5,570	-666	57,923	630,527	-57,829	94
일반회계	556,500	566,280	0	0	0	24,000	566,280	-9,780	14,220
기타 특별회계	1,101	23,883	6,236	5,570	-666	18,574	23,217	-22,116	-3,541
공기업 특별회계	14,584	39,980	0	0	0	15,349	39,980	-25,396	-10,047
기 금	513	1,050	0	0	0	0	1,050	-537	-53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45,737	-47,070	-44,317	-17,611	-57,829
통합재정수지 2	1,737	291	321	334	94

☞ 국도비보조금수입이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세입은 5.04% 증가하였으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출 및 순융자가 전년 대비 12.16% 증가하여 재정적자로 나타남.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분류 시에는 94백만원 흑자 재정.

4. 재정운용계획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3,558	879,645	896,876	916,009	936,491	4,492,579	2.0
자 체 수 입	88,701	89,613	93,232	96,393	99,511	467,450	2.9
이 전 수 입	619,462	627,421	651,975	673,165	680,550	3,252,573	2.4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395	162,611	151,669	146,451	156,430	772,556	0.2
세 출	863,558	879,645	896,876	916,009	936,491	4,492,579	2.0
경 상 지 출	160,139	161,137	162,989	165,946	173,222	823,435	2.0
사 업 수 요	703,419	718,508	733,887	750,063	763,269	3,669,144	2.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6	32,502
여성정책추진사업	11	2,62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24,4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7	5,436

▶ 2019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small>※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small>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공주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1,406	6,413	2,070	32,923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별첨 1)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공주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83	137	195	711,540	597,542	114,002
기 획 담 당 관	1	3	3	5	33,592	32,687	905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	1	3	3	3,593	3,622	-28
감 사 담 당 관	1	1	1	2	130	130	0
시 민 자 치 국	1	19	29	53	171,511	150,326	21,185
문 화 관 광 복 지 국	1	19	28	37	224,521	196,259	28,262
경 제 도 시 국	1	23	39	50	188,987	131,738	57,250
의 회 사 무 국	1	1	2	2	2,604	2,654	-49
보 건 소	1	4	7	11	15,688	14,192	1,496
농 업 기 술 센 터	1	8	18	27	63,561	59,921	3,640
사 업 소	1	4	7	5	7,353	6,013	1,341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66	66.34	27.91	30.92	48.78	97.12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ongju.go.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5	79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2	278	△1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동경비	203	49	△2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3	
	의원국외여비		31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0	
지방보조금		17,688	12,173	△5,5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76	1,37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20천원/1인기준	1,603	△332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1인기준	334	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총액한도제 운영
 -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기준액을 각각 79백만원, 56백만원으로 예산 편성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충남도에서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하며 기준액은 292백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278백만원을 각 부서에 나눠 편성

-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총액한도제 운영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총액한도는 4개 통계목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183백만원 편성

- ☞ 수립기준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17,168백만원을 일정공식을 계산 해 2019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17,688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 자체재원 12,173백만원을 편성
 -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수립기준 별표 4에 따라 이장수당 200천원/월, 이장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회이며, 반장수당은 50천원/연이 기준액으로 2019년 예산은 총 1,376백만원 편성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2019년 행정안전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 : 1,320천원
 - 대상인원 : 1,466명 / 기준액 1,935백만원 내 1,603백만원 편성

- ☞ 공무원 일·숙직비 : 수립기준 별표6에 따라 일·숙직 50천원 기준액으로 2019년 예산은 총 334백만원을 편성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50,000	623	78	54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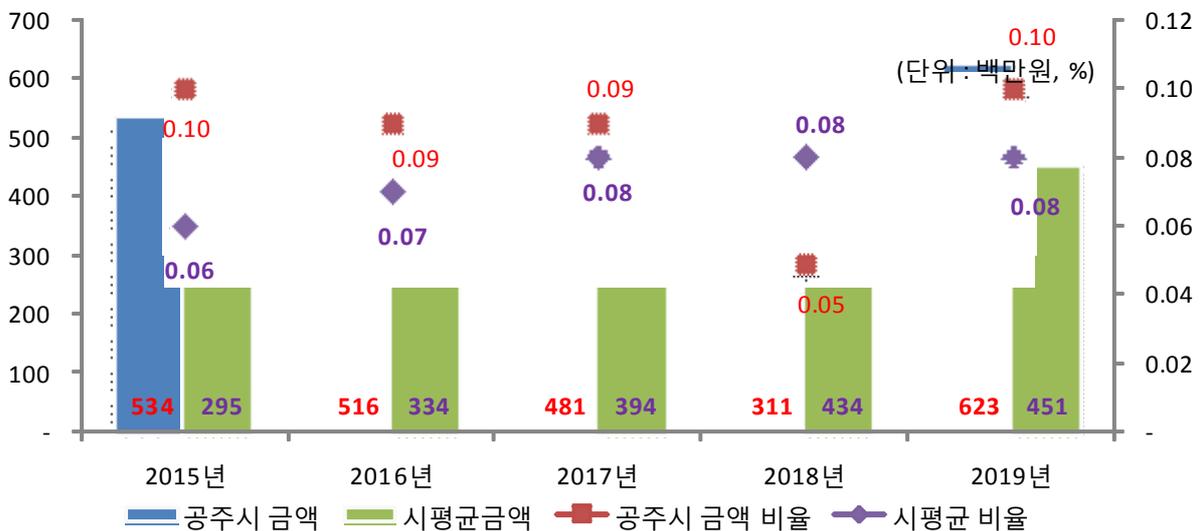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51,100	552,200	556,000	594,500	650,000
국외여비 총액 (B=C+D)	534	516	481	311	623
국외업무여비 (C)	101	83	77	87	78
국제화여비 (D)	433	433	404	224	545
비율	0.10	0.09	0.09	0.05	0.10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0,500	5,561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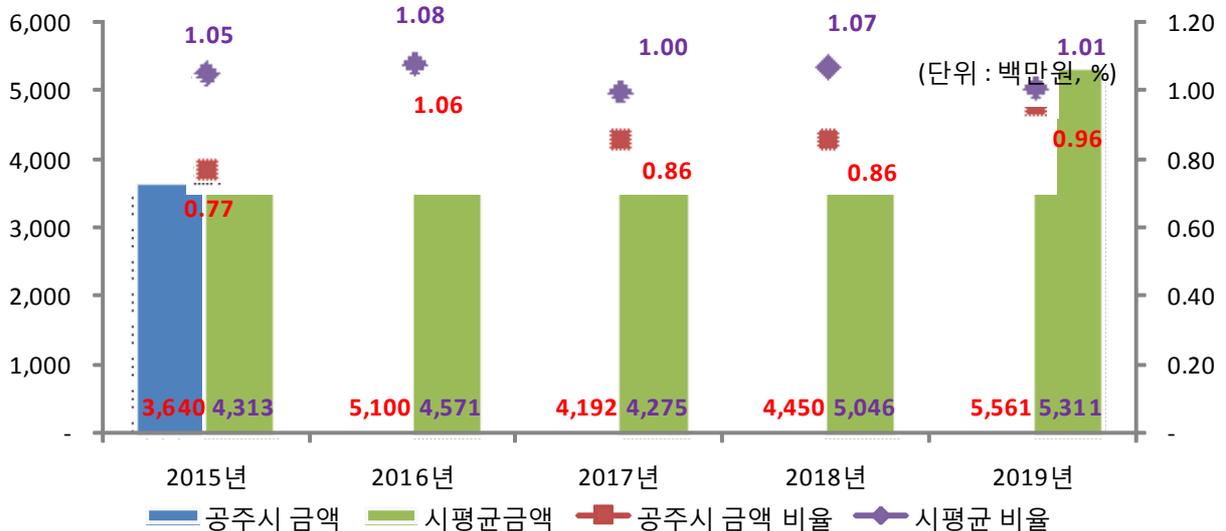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73,000	480,000	487,000	520,000	580,500
행사·축제경비	3,640	5,100	4,192	4,450	5,561
비율	0.77	1.06	0.86	0.86	0.96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5,276	5,397
인건비 건전 운영	707	810
지방의회경비 절감	27	49
업무추진비 절감	85	8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585	71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088	3,743
지방청사 관리·운영	1,954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2019년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은 추계분임, 산정내역 책자 수령시 수정공시 예정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393	2,709
지방세 징수율 제고	815	980
지방세 체납액 축소	△667	△518
경상세외수입 확충	1,683	2,07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38	17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2019년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은 추계분임, 산정내역 책자 수령 시 수정공시 예정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8년에 우리 공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기타	OO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75
계약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	6
계약 부적정	환경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 처리용량 과다 제한 등	15
징수 부적정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47
계약 부적정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15
계약 부적정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669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8년에 우리 공주시가 시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